

##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제정 2016. 01. 01

### I.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주)휴맥스(이하 '휴맥스')가 협력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우월적 교섭력 남용을 방지,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을 실행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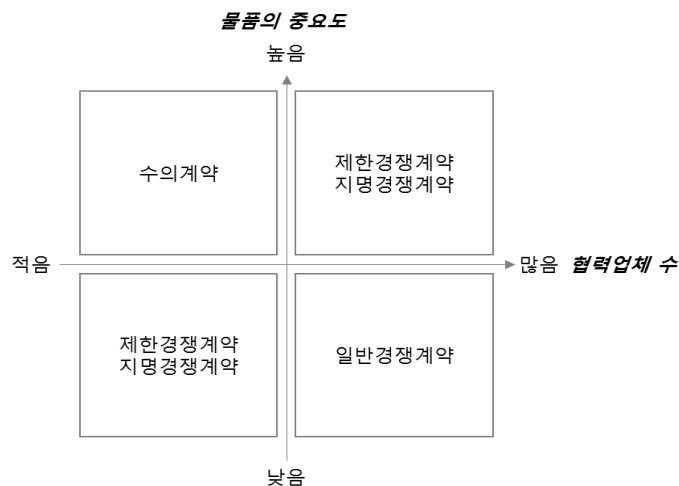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 1)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기준

- ① 휴맥스는 복수의 협력사를 통한 일반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물품의 중요도, 협력업체의 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방식을 선택 운용 할 수 있다.
- ② 아래 계약방식 선택기준에 의하여 계약체결방식을 운용한다.

[표 1. 계약방식 선택기준]



단, 휴맥스는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② 휴맥스의 기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적극적인 기술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 견적 제시로 휴맥스의 경쟁력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 ④ 단가 계약된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을 연장할 경우
- ⑤ 안전 확보, 지역 발전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 ⑥ 원자재 가격 급등, 기존 협력업체의 갑작스러운 생산 또는 거래 중단,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⑦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업체 외의 업체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⑧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나 신기술 적용 물품
  -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⑨ 기타 ODM 등 제품 단위로 구입/제조 위탁 시 특수한 기술/성능/설비/실적 등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

##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하여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구매 상담회나 사이버 제안(e-소싱) 마당을 운영한다. (<http://www.humaxdigital.com/kr/about/sourcing.php>)

##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 ①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여 업체들끼리 정보공유 및 협력을 지원한다. (<http://coadmin.humaxdigital.com/>)

## 4) 협력사 지원조직 운영

경영지원실 기획팀에 동반성장추진사무국을 두어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지원한다.

## 2.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1)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서면의 사전교부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 착수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 거래 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 한다.

## ②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고, 단가 변경의 사유,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 ③ 명확한 납기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해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 한다.
-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 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 ⑤ 합리적 대금지급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한다.
-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 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 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완성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한다.

- 대금을 완성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⑥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처리

-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하여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재작업 또는 반품처리 한다.

⑦ 계약해제 및 해지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 최고(催告)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催告)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휴맥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사의 납기준수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준수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협력사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의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⑧ 기술자료 임치제도

- 거래업체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게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 이용한다.

⑨ 수시 발주에 대한 개선

- 거래업체의 경영상 불안정 해소를 위해 위탁물량예고제를 실시하며, 내용은 상시 협력업체 포탈에 게시한다.

2) 계약체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 ③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④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⑥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⑦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⑧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3.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①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 ② 단가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 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 ③ 계약 변경에 따른 대금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 ④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계약이행 시 지양사항

- 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② 부당 반품 행위
- ③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⑤ 자사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
- ⑥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⑦ 보복조치 행위
- ⑧ 탈법행위
- ⑨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⑩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행위
- ⑪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HUMAX